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2.

민병덕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 1.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4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4. 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1차 정무위원회(2025.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민병덕의원)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최대 4회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원사업자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그 하단의 자재·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위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수요자인 발주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 또는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황 승 기)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제2207192호)

- ☐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을 현행보다 축소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 -----

의무 면제 사유 중 ①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삼자 간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급보증 의무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에서는 삼자 간의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위임을 받아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만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²⁾

개정안은 발주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할 때, 지급보증 제도가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 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반영한 것으로

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대표적으로 2023년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인 (주)대명수안이 발주자인 (주)대명종합건설로부터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 묵시적·명시적 위임을 받고, 공사대금을 원사업자인 (주)대명수안이 지급하였음. 이는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와 지급보증 의무 모두를 회피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에서 삭제하려는 요건인 ①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②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모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인데,

직접 지급의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이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압류 결정 이후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개정안처럼 이를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삭제하면 발주자 직접 지급보다는 지급보증 제도를 장려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경우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데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고, 보증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다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현행법 제14조제2항³⁾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의 보증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제3의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자신의 하도급대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도 함께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개정안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급보증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제3의 채권자의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봄.⁴⁾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 발주의 경우 민간 발주와 달리 발주자 지급 불능 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언급된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임.

3)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4) 이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도급 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강일의원안(2209203), 강준현의원안(2209345))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